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9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대한민국의 문화 및 관광중심인 종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 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주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국 명칭 변경 (안 제3조제1항)
- 관광활성화 전담기구인 관광과 신설 (안 제4조제1항)
-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 통합 (안 제6조제1항)
- 업무의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부서간의 소속 국 이동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 방재업무 강화를 위한 부서재편 (안 제8조제1항)
- 기구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다른 조례에 있는 명칭 등은 부칙으로 수정

III. 검토의견

1. 배 경

-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07. 1. 1.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총액 인건비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 총액인건비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내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종전 표준정원제하의 5급 이상 정원 및 총 정원 초과책정에 대한 행자부 승인이 불필요하고, 과단위 이하 행정기구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다만 4급 국단위 기구는 현행 기준으로 설치·운영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이 4급인 경우의 직급 책정시에 한해 행자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조직관리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여건·특색에 맞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대한 자율적 진단을 통해 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상시 점검하여 재배치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으며,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도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검토사항

-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문화 및 관광중심인 종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을 설치·운영하여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종로를 건설하고,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 본청 기구를 개편한다는 것인 바,
 - 종로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곳곳에 문화와 역사적 유산이 산재해 있고 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써,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의 80%이상이 서울을 방문하고 이 중 대다수 관광객이 고궁, 인사동, 박물관 등 종로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 특히 청계천 복원 이후 국내·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문화공간에 구체화시킴으로써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살린 독특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변화하는 관광객의 요구에

대응해 나가야 하겠으며, 이번 문화·관광분야의 조직보강으로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촉진과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의 지속적 개발 등 종로구의 경쟁력 강화에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 기구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관광의 중심인 종로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인 관광과를 신설하는 대신(안 제4조제1항) 주민생활계획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3개과의 업무를 상호 조정하여 주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2개과로 통·폐합하고(안 제6조제1항), 주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국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안 제3조제1항),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일부 부서의 소속 국을 이동한 내용으로써, 현행 기구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관광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무조정 및 소요인력을 재배치한 것으로 요약되는 바, (별첨 조직개편 요약 참조)

- 총액인건비제에 의하면 과단위 이하 기구는 조례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도 기구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기구가 증설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성경비가 증가하게 되고,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므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사료되며,

※ 2007 총액인건비 책정액 : 80,371,369천원 (2007 예산편성액 : 84,188,075천원)

⇒ 행정수요 반영한 지자체별 적정인력 × 인건비 단가(2005년도 결산액)

-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단순·일상업무 기능 이외에 임시조직의 활용 등 부서운영의 유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IV.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 (총액인건비정원제의 시범운영 등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의 범위안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조 직 개편 요약

현 재			변 경		
국명	과 명칭	기구수	국명	과 명칭	기구수
계		28	계		28
	○감사담당관	1		○감사담당관 (조직진단팀 신설)	1
행정 관리 국	○총 무 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여 권 과	5	행 정 국	○총 무 과 (능력개발, 신청사팀 신설) ○자치행정과 (평생교육, 민방위 추가) ○민원봉사과 ◆문화과 (문화·관광업무 추진 강화) ◎관광과 (기획, 사업, 마케팅팀 신설) ○여 권 과	6
재 정 제 국	○재 무 과 ○산업환경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지 적 과	5	기 획 재 정 국	◇기획예산과 (업무 연계성 강화) ○재 무 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지 적 과	5
주민 생활 지원 국	⊗주민생활계획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진흥과 ○청소행정과	5	복 지 환 경 국	※팀 통폐합 (△ 4개 팀) ●주민복지과 (부서 재편, 팀 개편) ○가정복지과 (부서 재편, 팀 개편)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 (주민생활 지원 강화)	4
도 시 관 리 국	○주 택 과 ○도시계획과 ○건 축 과 ○공원녹지과	4	도 시 관 리 국	○주 택 과 ○도시계획과 ○건 축 과 ○공원녹지과	4
건 설 교 통 국	○건설관리과 ○토 목 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5	건 설 교 통 국	○건설관리과 ○토 목 과 (업무량 재 배분, 이관) ●치수방재과 (방재업무 기능 강화) ○교통행정과 (승용차요일제 추가) ○교통지도과	5
보 건 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 약 과	3	보 건 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 약 과	3

※ ◎ 과 신설 / ◇ 국 간 이동 / ● 과 명칭변경 / ⊗ 과 폐지